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 추가〉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734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참고사항	2
V . 검토의견	3
1. 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안 제39조)	3
[참 고]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10. 28.

다. 회 부 일 : 2025. 10. 29.

II. 제안이유

최근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글로벌 경제 및 공급망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공급망 강화 및 선제적 위기대응역량 확보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난해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금융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위기대응역량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원 조성 방식만으로는 기금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바, 법 개정을 통해 기금 재원을 다양화하여 우리 기업의 금융 수요에 대한 보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가능케 하고자 함.

이에, 민간기업 등 정부 외 기관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근거를 마련하여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안정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Ⅳ.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V. 검토의견

1. 정부 외의 자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안 제39조)

현행	개정안
○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제39조제1항) -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 <신설>	○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제39조제1항)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안은 민간기업 등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임.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은 경제안보품목¹⁾ 및 경제안보서비스²⁾의 확보, 도입 및 공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

1)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지정된 품목(「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4호)

2) 안정적인 제공 및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제안보품목의 원활한 도입·생산과 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로서 지정된 것(「공급망안정화법」 제2조제5호)

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등을 위한 사업을 대출, 보증, 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함.³⁾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은 ①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②정부·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③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④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임.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2025년 8월 말 기준 총 2조 9,400억원이 발행되었음.

그리고 기금은 자금의 대출, 자산의 매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그 외 신용공여,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 등의 방법으로 공급망안정화

3) 「공급망안정화법」

제38조(공급망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의 공급망 위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경제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원한다.

1. 경제안보품목등의 확보, 도입 및 공급
2.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3.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도입·개발·개량·상용화
4.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5.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분야로서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가 인정하는 분야

4) 「공급망안정화법」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4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 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및 제41조제2항제2호의 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한국수출입은행은 자금지원(제41조에서 정한 대상 및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지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채권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채증권으로 본다.
- ③ 정부는 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수출입은행이 제1항제2호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에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음⁵⁾.

기금은 2024년에 대출 2조 119억원과 투자 1,000억원 등 총 2조 1,119억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7월 말 기준 3조 2,892억원의 대출과 200억원의 투자 등 총 3조 3,092억원을 지원하였음. 분야별로는 이차전지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누적 2조 6,350억원을 지원하고, 핵심광물과 에너지 등 자원안보에 1조 6,868억원을 지원했으며, 식량과 산업원료 등 경제필수재에 1조 495억원 등을 지원했음.

5) 「공급망안정화법」

제41조(기금의 지원대상·용도) ① 기금은 제38조제2항의 분야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1.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안정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제43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공급망안정화 목적으로 지원하는 자금과 그 부대비용
 - 가. 자금의 대출
 - 나. 자산의 매수
 - 다.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 라. 가목 및 다목 외의 방법에 따른 신용공여
 - 마. 사채의 보증 또는 인수
 - 바. 출자(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의 인수를 포함한다)
 - 사. 제2호의 회사등에 의한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법에 따른 지원
2.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자금지원에 따라 취득한 자산 등을 관리·운용 및 처분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투자나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방법으로 지원되는 자금 및 그 부대비용
3. 차입금과 그 이자의 상환
4. 채권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운용비용

개정안은 기금이 공급망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외의 자가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유사하게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⁶⁾도 기금의 재원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을 포함하고 있음.⁷⁾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기금 간 재원 비교]

	공급망안정화기금 (공급망안정화법)	첨단전략산업기금 (한국산업은행법)
재원	●정부보증 기금채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정부보증 기금채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정부, 한국은행 차입금
	●회수자금	●회수자금
	●기금 운용수익 등	●기금 운용수익 등
	-	●한국산업은행 출연금 ●산은외 금융회사 출연금
	-	●정부 이외 출연금 및 기부금

6)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8(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 ①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2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2. 정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이하 "첨단전략산업기업등"이라 한다)과 제29조의9제2항제2호에 따른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으로부터 회수한 자금
4.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수익 및 그 밖의 수입금
5. 한국산업은행 및 그 밖의 금융회사 출연금
6.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7) 참고로, 재정경제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다양화하면 기금 수요에 대해 보다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한국수출입은행도 동일한 입장임.

참고로, 개정안은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국수출입은행 및 금융회사”가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2214177호)이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12월 2일에 의결되었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9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 4 (현행과 같음) <u>5. 그 밖에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u>

문의처

02)6788-5148

참고 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이후 지원 실적

□ 지원수단별

(단위: 억원)

구 분	'24년	'25. 7월
대 출	20,119	32,892
투 자	1,000	200
합 계	21,119	33,092

□ 기업규모별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 7월			
	승인 건수	비중	승인액	비중	승인 건수	비중	승인액	비중
대기업	11	50.0	19,560	92.6	16	55.2	29,284	88.5
중견기업	3	13.6	800	3.8	10	34.5	3,661	11.1
중소기업	8	36.4	759	3.6	3	10.3	147	0.4
합 계	22	100.0	21,119	100.0	29	100.0	33,092	100.0

주) 펀드투자는 대기업에 포함

□ 지원 분야별

(단위: 억원, %)

구 분		'24년	'25. 7월
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8,700	6,050
	반도체	4,500	7,100
소계		13,200	13,150
자원안보	핵심광물	3,990	1,620
	에너지	-	11,258
소계		3,990	12,878
경제필수재	식량	810	4,100
	산업원료	3,114	1,466
	기계장비	5	1,000
소계		3,929	6,566
물류인프라·서비스		-	498
합 계		21,119	33,092

참고 2

벤처투자 동향 (자료 : 벤처캐피탈협회)

1. 펀드결성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비중)	'24년(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조합(A)		68,031 (51.4)	57,571 (53.3)	△ 10,459	△ 15.4
	신기술투자조합	62,297 (47.0)	47,979 (44.4)	△ 14,318	△ 23.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2,142 (1.6)	2,527 (2.3)	385	18.0
	소 계(B)	64,439 (48.6)	50,506 (46.7)	△ 13,933	△ 21.6
합 계(A+B)		132,469 (100.0)	108,077 (100.0)	△ 24,392	△ 18.4

2. 벤처투자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23년		'24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증감	증감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A)		53,977	45.4	66,315	51.2	12,338	22.9
그 외 조합 (a)	신기술투자조합, 회사	55,156	46.4	53,142	41.0	△ 2,015	△ 3.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1,435	1.2	2,142	1.7	707	49.2
정책 금융 기관 (b)	산업은행	4,903	4.1	4,518	3.5	△ 385	△ 7.9
	기업은행	1,753	1.5	2,022	1.6	269	15.3
	신용보증기금	664	0.6	658	0.5	△ 6	△ 0.9
	기술보증기금	981	0.8	741	0.6	△ 240	△ 24.5
소계((a)+(b) = B)		8,301	7.0	7,939	6.1	△ 362	△ 4.4
합계(A+B)		118,870	100.0	129,538	100.0	10,668	9.0